

【 1 】 제15회 임시회회기 결정의건

제의년월일 : 1993. 2. 8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제15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 회 기 : 1993. 2. 12 ~ 2. 13 (2일간)

【 2 】 1993년도 군정보고의건

제출년월일 : 1993. 2. 11.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1993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함.

주요골자

가. 시정연설

나. 199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 3 】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2. 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지원코자 함.

주요골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감면대상) 제1항제1호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4 】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2. 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